개발행위(변경) 허가신청서

※ []에	는 해당되는	곳에 √표를 합니	나다.									(앞쪽)
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									기간	15일	(# 17	
[]	공작물설치	[] 토지	형질변경	[]	토석채취	\$	[] 토	지분할	<u> </u>	[] 물건	건적치	
-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									
신청인	주소											
	(전화번호							호 :)	
	창업자 해당 여부: [] 해당 [] 미해당											
	※ 신청인은 뒷쪽의 '작성방법 안내'를 확인하고, 창업자 해당 여부에 √표를 합니다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하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들에 동의여부											
	전자우편	· 행정절치법」 제	14조에 따라 1	정보통신망	을 이용한 기	배발행위하	가 신청결	화등의	문서송딜	에 동의여	부	
	송달동의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							
		전자우편 주소 @										
 (변경)허가신청 사항												
위치(지번) 지목												
용도지역 용도지구												
신청 내용	공작물	신청면적		무								
	설치	공작물구조	1			부피						
	토지형질 변경	토지현황	경사도					토질				
			토석매장	량 								
			주요수종						TI			
		현황	입목지					무입목	시			
		신청면적 입목벌채	수종					나무 =	<u> </u>			
	토석채취	신청면적	То					부피	Г			루
	토지분할											
	물건적치	무게						부피	• •			
		품명						평균적	치량			
		적치기간	년	월	일 부터	터	년	월	일까	가지 (개월긴	<u>F)</u>
개발	행위목적											
(변	경사유)											
사	 ·업기간	 착공	년	월	일, 전	 준공		 년	월	일		
 「국 <u>!</u>	토의 계획 !	및 이용에 관	 한 법률」	제57조	.제1항 및	같은	법 시형	행규칙	제9조	에 따라	위와 깉	-0
허가를	신청합니	다.										
										년	월	일
신청인											(서명 또	는 인)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												
÷1 F	4112	디ᄍ 친조									수수회	
섬두	무서류	뒤쪽 참조								없음		

첨부 서류

- 1.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·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2.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3. 설계도서(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4.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5.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·세목·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)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·환경오염방지·경관·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(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. 다만,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,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작성방법 안내

- 1. 신청인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- 2.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「건축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「「건축법」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「건축법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3.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공작물 구조는 모양,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시)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,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
- 5. 토지형질 신청면적(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)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. (예시) 1,000㎡ 필지의 일부인 100㎡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㎡로 기입(개발행위허가규모는 1,000㎡)
- 6.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. (예시) (신청면적) 1,000m'→2,000m' (입목벌채 나무수) 240그루 → 310그루

